

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6년 10월 11일
- 회부일자 : 2006년 10월 11일

3. 제안이유

-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골자

-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의 요건 설정(안 제4조)
- 정비계획의 세부기준 설정(안 제9조)
-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건설규모(안 제19조)
- 공급 순위 설정(안 제21조)
-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선정기준 (안 제24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검토한 바
-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
- 안 제3조 노후·불량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데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이유
- 안 제4조 제1호중 상습침수지역, 재해위험지구 포함여부
안 제4조 제2호 주택재개발 지역에 대한 요건 중
가목, 노후·불량주택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
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과
다목, 호수밀도 헥타아르당 60호 이상으로 한 이유
- 안 제6조 제1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관할 시장·군수에게
정비구역지정 제안시 당해지역 토지소유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
얻도록 한 이유
- 안 제7조제9호중 “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
배치의 변경”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혼돈이 예상되며
- 안 제9조 제1호 다목중 “정비구역의 면적은 사업시행 후 주변지역의
기능 회복 및 전환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로 하고”는 내용이
모호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